

방문판매법 및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 개·제정

이성구 | 공정위 전자거래보호과 과장

1. 추진 배경 및 경위 ●●●●●

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(이하 '방판법'이라 한다)중 통신판매 관련 규정을 새롭게 발전하는 인터넷상거래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(이하 '전자거래보호법'이라 한다)로 별도 제정하고, 법 운용 부서가 산자부에서 준사법적 행정기관인 공정위로 변경됨에 따라 법집행 체계를 정비하였다.

방판법 개정안과 전자거래보호법 제정안은 2000년 11월 발의되어(다음해 4월 수정발의) 2002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.

2. 주요 내용 ●●●●●

가. 방파법 · 전자거래보호법 공통 부분

- 법 적용대상 범위(방문 제3조, 전자 제3조)
 - “소비자”의 개념에 열등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(사업권유 거래의 개인사업자 등)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정
 - 청약의 철회(방문 제8조, 제17조, 전자 제17조)
 - 방문 · 다단계판매의 무조건 청약철회 기간 10일, 20일을 14일로 통일
 - 통신판매(전자상거래)의 경우, 무조건 청약철회 신규도입 : 7일
 - ※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종래 기간이 없었던 것을 3개월로 한정
 - 결재수단제공자의 책임관계 구체화(방문 제8조, 제18조 전자 제18조)

- 청약철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환급 거부시 결제업자(신용카드업자 등)의 협력(상계를 통한 대금회수 등)의무를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
- “소비자보호지침”의 도입(방문 제33조, 전자 제23조)
 - 공정위가 정한 “소비자보호지침”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,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토록 함
- 소비자정보이용의 합리화(전자 제11조, 제21조)
 - 개인정보 도용시 당해 사업자의 확인 · 주의의무를 부과(전자 제10조)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하되, “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” 등 예외사항을 두(제21조 제1항제6호)
 - ※ 다수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방문 ·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도 준용

나. 방판법 관련 사항

- 법 적용대상 거래를 확대함(방문 제2조, 제4조, 제28조 내지 제32조)
 - 전화권유판매는 현행 규정상 통신판매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으나,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 · 판매한다는 특성을 감안, 방문판매 규정 준용
 - 학습지, 피부미용 등 일정기간 계속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계속거래계약 중도해지권을 인정하고 위약금 청구 범위를 제한하며, 사업기회의 제공을 유인으로 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고는 거래(사업권유거래)에서의 부당행위를 금지
- 다단계판매원 모집광고시 중요정보 고지 규정(방문 제21조)
 - 다단계판매원 모집광고시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평균적인 수당 지급수준 등 중요정보를 고지토록 함
-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 도입(방문 제34조)
 - 현행 규정상 일정한 조건하에서의 청약철회 또는 공탁제도 등으로 소비자피해구제를 담보하고 있으나 실질적 보호기능 미흡
⇒ 다단계판매업자에게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가입을 “의무화”하고 사업자들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(방문 제38조)
-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능 보완(방문 제37조, 제42조, 제44조, 전자 제26조, 제31조, 제34조)

- 공정위와 시도지사가 모두 위법행위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, 형사벌 외에 위반행위 시정권고·시정조치 및 과징금 도입
- 소비자보호 관련 인증·평가의 공정화(방문 제38조, 전자 제29조)
 - 소비자보호 관련 인증·평가사업자로 하여금 그 기준 등을 공시도록 함
- 소비자피해구제기관 활용의 효율화(방문 제42조, 전자 제33조)
 -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업무의 폭주에 대비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앞서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

다. 전자거래보호법 관련 사항

- 전자상거래 관련 기본적 소비자보호조항 신설(전자 제5조)
 - 소비자와 사업자가 사전 약정한 주소로 전자문서 송부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 고, 사업자에 의한 특정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 강제 금지
- 조작실수방지근거 및 각종 고지의무 강화(전자 제7조, 제13조)
 - 컴퓨터 등 기기조작 실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성립, 대금결제 등에 앞서 정정·취소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
- 전자적 지불수단 제공자의 책임 명확화(전자 제8조)
 - 위·변조여부 확인을 위한 전자결제수단 제공자의 주의의무 및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 도입
- 법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 확대(전자 제20조)
 - 매매의 중개만을 하는 경우, “중개자”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소비자권의 보호 (경매 또는 공동구매 사이트 등)